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04호
----------	--------

제출년월일 2025. 4.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위기가구를 발굴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발굴 포상금 지급 건당 한도액을 상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기준 개정 (안 제6조)
 - 1건당 3만원 → 1건당 5만원 (연 최대 지급 기준은 유지)
- 나. 그 밖에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5년도 본예산 900천원 반영 (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2. 26. ~ 3. 18.(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나) 경기도 : 복지정책과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를 “하나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만원” 을 “5만원”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로” 를 “시장이 따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복지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팀장 직위·성명	희망복지팀장 전진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 이하영(☎26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포상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u>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 4. (생 략)</p> <p>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u>3만원</u>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p> <p>제7조(포상시기) ① (생 략)</p> <p>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따로</u> 정한다.</p>	<p>제6조(포상기준) ① ----- ----- <u>하나의</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5만원</u>----- ----- -----.</p> <p>제7조(포상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장이 따로</u> ----- -----.</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 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통·리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급 기준 충족시 위기가구 발굴포상금 지급 (1건 5만원, 1인 최대 연30만원)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 강영화 팀장 전진선